

SPSPSPSP
SPSPSPSP
SPSPSP
SPSPSP
SPSP
SPS

SPS-KHFC-006-6337

SPS

드레스 수납 시스템



SPS-KHFC 006-6337:2015

텍스트를 입력하려면 여기를 클릭하거나 탭하세요.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2015년 12월 22일 제정

심 의 :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단체표준심사위원회

	성 명	근 무 처	직 위
(위원장)	박성유	한국체육시설공업협회	전무이사
(위원)	조숙경	서일대학교	교수
	임채훈	(주)한샘	이사
	김홍광	(주)넥시스 디자인 그룹	부사장
	이종욱	(주)백조썬크	대표이사
	김성민	한양대학교	수석
	박진형	한국실내건축환경시험연구원	센터장
(간사)	홍준기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팀장

원안작성협력 : 단체표준작업반

	성 명	근 무 처	직 위
(위원장)	안윤노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본부장
(위원)	홍준기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부장
(간사)	김승호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과장

표준열람 : e나라표준인증(<http://www.standard.go.kr>)

제정단체 :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제 정 : 2015년 12월 22일
심 의 :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단체표준심사위원회
원안작성협력 : 단체표준작업반

이 표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e나라표준인증 웹사이트에 등록된 표준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이 표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운용 요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매3년마다 확인, 개정 또는 폐지됩니다.

목 차

머 리 말.....	ii
1 적용범위.....	1
2 인용표준.....	1
3 용어와 정의	2
4 각 부의 명칭.....	2
5 치수.....	3
6 재료.....	3
7 구조 및 가공.....	5
8 품질.....	6
8.1 겉모양.....	6
8.2 성능.....	6
9 시험조건.....	7
10 시험.....	7
10.1 강도 및 내구성 시험.....	7
10.2 재료의 시험.....	9
11 설치.....	10
11.1 설치준비.....	10
11.2 시스템 가구의 설치.....	10
11.3 설치 후 점검.....	10
12 검사.....	10
13 표시.....	10
14 사용상의 주의사항.....	11
SPS-KHFC-006-6337:2015 해 설.....	12

머 리 말

이 표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에 따라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단체표준심사위원회를 거쳐 제정한 단체표준이다.

이 표준의 내용 일부 또는 전부는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이 표준의 내용 일부 또는 전부가 ISO·IEC 등에서 제정한 표준을 참고하여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 해당 표준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ISO·IEC 등의 저작권 보호 규정 등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이 표준의 일부가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의를 환기한다.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의 장과 단체표준 심사위원회는 이러한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계되는 확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드레스 수납 시스템

Dress storage system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이 표준은 일반 가정에서 드레스 룸에 의류 및 관련 악세사리 등을 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수납 시스템(이하 “시스템 가구”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고 여기서 수납 시스템이란 주로 의류 및 관련 악세사리 등을 보관하기 위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일반 수납장과는 달리 상자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포스트(지지대)와 선반 등으로 조립되어 벽체나 천정 또는 바닥에 고정하여 드레스 룸에 전용으로 설치되는 구조물 형태의 가구 제품

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주석을 포함)을 적용한다.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도장판 및 조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
- KS F 3101, 보통합판
- KS F 3104, 파티클 보드
- KS F 3200, 섬유판
- KS F 6313, 시스템 키친
- KS G 4007, 가구의 성능시험방법 통칙
- KS G ISO 7170, 수납가구의 강도 및 내구성 시험방법
- KS G ISO 7171, 가구 — 수납 가구 — 안정성 시험방법
- KS K 0911, 변퇴색용 표준회색 색표
- KS M 1998, 건축 내장재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 KS M 3332, 열경화성 수지 고압 화장판 시험방법
- 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
- KS M 3701, 요소수지 목재 접착제
-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고압 화장판

3 용어와 정의

이 표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3.1

목질 판상재

목재 또는 목질원료를 접착제 등의 결합제를 사용하여 고온·고압으로 열압·성형하여 판상의 형태로 가공한 것.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집성보드 등을 말한다.

3.2

목질 가공재

목질 판상재의 표면에 피복, 도장, 인쇄 등의 가공을 통하여 만든 것. 특수가공치장합판, 치장파티클보드, 치장섬유판 등을 말한다.

3.3

선반판

수납을 목적으로 한 판모양의 부재, 고정형과 이동형이 있다.

3.4

포스트(post)

드레스 시스템의 선반 및 악세사리함, 옷걸이봉 등을 고정하여 지지하고 배치형태에 따라 구조물을 지지하는 목재 또는 알루미늄 소재의 기둥

3.5

서랍

옷 등을 개서 넣어 보관할 수 있고 빼었다 끼울 수 있는 상자

3.6

걸이용 레일

옷 등을 걸기 위한 레일

3.7

악세사리함

넥타이, 양말 등을 정리하기 위한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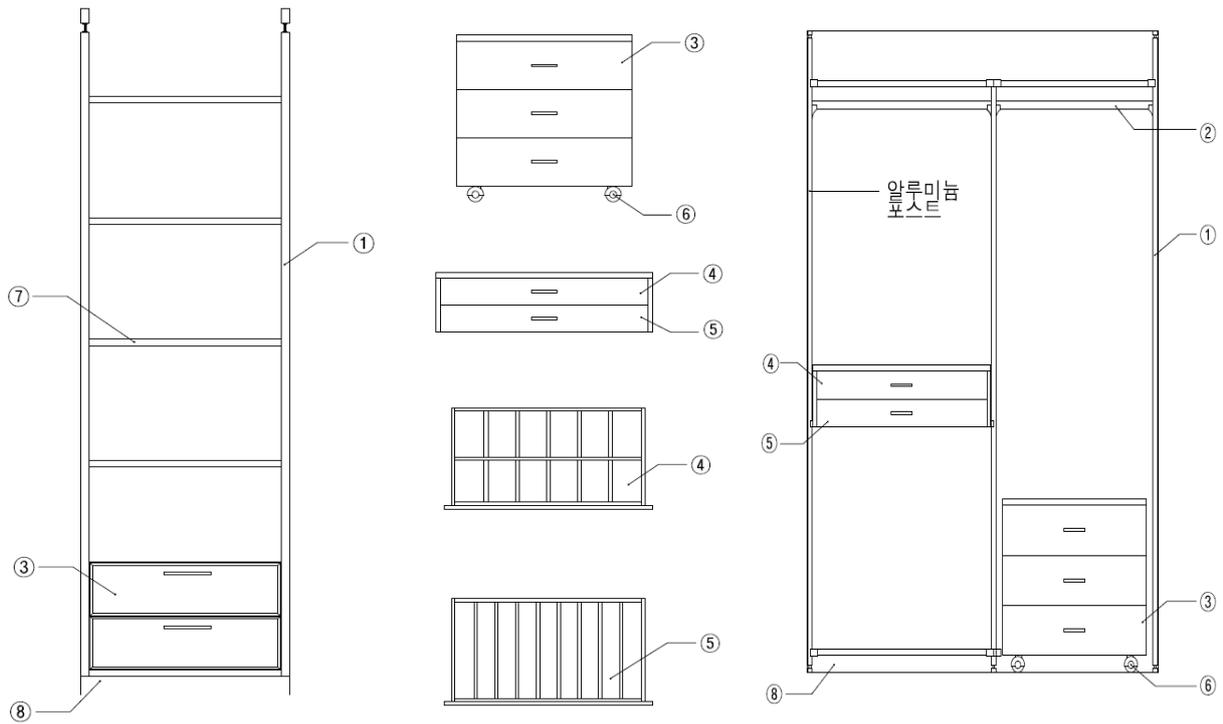
3.8

바지걸이

바지 등을 수납하기 위한 부재

4 각 부의 명칭

4.1 시스템 가구의 각 부의 명칭은 그림 1과 같다.



번호	명칭	번호	명칭
1	포스트	5	바지걸이
2	걸이용 레일(옷걸이 봉)	6	캐스타
3	서랍장	7	선반
4	악세사리함	8	걸레받이 공간

그림 1 — 각 부의 명칭

5 치수

시스템 가구의 치수는 인도, 인수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다만 주문자 제작 치수를 기준으로 하며, 각 부재의 치수의 허용차는 +1 mm, -2 mm로 하며, 나머지 허용차의 치수의 허용차는 ±2 mm로 한다.

6 재료

6.1 시스템 가구의 주요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 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표 1 — 재료

재료구분	재료
목재	목재 함수율은 12 % 이하이고, 갈라짐, 변형, 벌레먹음 등 뚜렷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함수율의 측정은 KS F 2199에 규정하는 방법 또는 전기적 측정방법에 따른다.
목질재료	KS F 3101(보통합판) KS F 3104(파티클 보드) KS F 3200(섬유판)
화장판	KS M 3803(열경화성 수지 고압 화장판)
접착제	KS M 3700(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 KS M 3701(요소 수지 목재 접착제)
기타금속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D 671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도장판 및 조)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6.2 인테리어 시트¹⁾는 변색, 찢김, 박리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다음 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 — 인테리어 시트

구분		단위	기준			비고
			내부마감용	외부마감용	외부마감용(고광택)	
인장강도	가로	N/cm ²	2 500 이상	3 000 이상	3 500 이상	KS M 3001
	세로		2 500 이상	3 300 이상	4 000 이상	
인열강도	가로	N/cm	900 이상	800 이상	800 이상	
	세로		800 이상	800 이상	800 이상	
신율	가로	%	200 이상	100 이상	100 이상	
	세로		200 이상	100 이상	100 이상	
내약품성		—	3등급 이상일 것			KS G ISO 4211
광택		도	—	—	84 이상	KS M ISO 2813
최소두께	올레핀계, 폴리에스터계	mm	0.15 이상	0.30 이상	0.45 이상	
	PVC계 및 기타	mm	0.2 이상	0.35 이상	0.55 이상	
프탈레이트계함유량	DEHP	mg/kg	미 검출(검출한계: 50 mg/kg)			KS M 1991
	DBP	mg/kg	미 검출(검출한계: 50 mg/kg)			
	BBP	mg/kg	미 검출(검출한계: 50 mg/kg)			
기타			유해 난연제 사용금지 규제 및 가소제 사용 규제기준 준수			
비고 1 DEHP — Di(2-ethylhexyl) Phthalate 비고 2 DBP — Dibutyl Phthalate 비고 3 BBP — Benzyl Butyl Phthalate						

1) 인테리어 시트: 문양, 색상, 무늬를 인쇄, 가공한 접착층이 없는 합성수지 재질의 표면재로 가구표면, 몰딩, 창호 등에 부착하여 원재료의 질감을 갖도록 한 합성수지(PVC)계, 올레핀계(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터계의 시트를 말한다. 다만 멜라민 수지 등의 열경화성 수지 재질 시트는 제외한다.

6.3 무늬목의 사용시에는 용이 등이 적으며, 무늬결 간격이 일정하고 색상이 균일한 것으로 표면에 흠 등 결점이 없어야 한다.

6.4 저압 메라민(LPM: Low Pressure Melamine)시트는 함침 후 수지함유량(무게)이 원지 대비 (52 ~ 60) %, 원지무게 80 g/m²(백색의 경우 100 g/m² 이상이어야 한다)이상인 것으로 요철, 오염, 흠 등이 없어야 한다.

6.5 피니싱 호일(Finishing Foil)은 원지무게 60 g/m² 이상인 것을 사용하고 내수성, 내 스크래치성, 내 박리성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6.6 사용하는 재료는 인체에 유해한 물성을 갖지 않은 것으로 한다.

6.7 금속제 및 합성수지제의 부속 부품과 같은 재료는 각각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며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 또는 처리를 한 것으로 한다.

6.8 재료의 안전성

시스템 가구의 재료는 사용되는 단계에서 실내공기질과 관련하여 인체의 안전에 관련된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적합하여야 하며 표 3의 허용기준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 제품 표면에 사용되는 인테리어시트는 5.1의 성능을 포함하여, 인체에 유해한 물성이 기준치 상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 목질판상재(파티클보드, 섬유판, 합판)는 폼알데하이드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표 3 — 유해물질 허용기준

구분	항목	허용 기준치	비고
인테리어시트	폼알데하이드	0.015 mg/(m ² · h) 미만	실내공기질공정시험방법 (환경부) 소형챔버법 ^a
	TVOC	0.1 mg/(m ² · h) 미만	
	5VOC	0.03 mg/(m ² · h)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판 • 파티클보드 • 섬유판 	폼알데하이드	평균 0.5 mg/L 이하, 최대 0.7 mg/L 이하	데시케이터법 ^b
^a 소형챔버법: KS M 1998에 따른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방법으로, 시험용 챔버 공기 농도의 측정은 시험 시작 후 7일 (168시간 ± 2시간) 째에 포집하여 실시한다. ^b 데시케이터법: 시험편의 매수가 바깥쪽 면과 안쪽 면의 총 합계면적이 1 800 cm ² 가 되도록 하고 3매의 판을 채취하여 KS M 1998 건축 내장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측정에 따른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그 평균값과 최대값을 방산량으로 한다.			

7 구조 및 가공

시스템 가구의 구조 및 가공은 다음에 따른다. 다만, 해당하는 부재 또는 부품이 없는 경우는 그 항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7.1 구조는 충분한 강도 및 내구성을 갖고 설치를 하였을 때 안정한 구조이어야 한다.

- 7.2 접합부는 용접, 접착, 나사류 및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 7.3 나사류, 기타의 쇠붙이를 이용하여 조립하는 경우는 결합부가 헐거워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7.4 접착부는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접착되어 하며 겉모양 접합면을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 7.5 목재 및 목질 재료 사용시 조립 후 갈라짐, 휨 등의 결함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7.6 부재를 플러시 구조로 하는 경우는 비틀림, 요철, 휨 등이 잘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7.7 완성 후 심히 불쾌감을 주는 냄새가 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또한 인체에 해로운 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시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야 한다.
- 7.8 선반판은 사용시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 7.9 문과 서랍의 개폐는 작동이 원활하며 쉬워야 한다.
- 7.10 서랍레일은 금속제 또는 내구성이 있는 제품으로 사용해야 하며, 서랍을 당길 때 멈춤 장치 등에 의해 쉽게 분리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7.11 장의 유효나비 및 높이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고, 수납으로 인하여 밀판 등의 결함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 7.12 인출식 다용도 걸이, 바지걸이, 망 서랍, 옷걸이 봉, 알루미늄 포스트 등은 녹이 슬지 않고, 수납시 변형, 탈락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며 부드럽게 작동이 되도록 한다.
- 7.13 조절장치나 캐스터가 다리에 부착되어 있다면 튼튼하고, 헐거움, 떨어짐 등이 없이 원활한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 7.14 각 부재는 교환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고, 분리된 상태에서 조립.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8 품질

8.1 겉모양

- a) 시스템 가구의 다듬질은 양호하여야 하고, 사용상 지장이 되는 흠, 변형, 부품, 용접 모양에 흠 등이 없어야 한다.
- b) 도장면은 광택 색조가 균일하고, 도장 얼룩, 칠이 한군데로 몰리거나 흐름 등의 결함이 없이 평활하여야 한다.

8.2 성능

시스템 가구는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여 표 4의 규정에 적합 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은 종류별로 대상제품에 갖춰진 기능에 관해서만 대표적인 구성재에 대하여 이 시험 항목 중에서 선택 한다.

표 4 — 성능

항목		성능	적용 시험조건	
강도 및 내구성	선반판 지지구의 강도 ^a	선반판 지지구의 빠짐이 없고, 변형이 없을 것	10.1.1.1	
	선반판의 휨 ^b	선반판의 휨 변형량이 0.3 % 이하이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 것	10.1.1.2	
	걸이용 레일 지지구의 강도	사용상 지장이 있는 파손, 변형 및 어긋남이 없을 것	10.1.2.1	
	걸이용 레일의 휨	휨 량은 0.4 % 이하로 하며, 파손 및 변형이 없을 것	10.1.2.2	
	서랍 및 레일의 강도 ^c	사용상 지장이 있는 파손 및 변형이 없을 것	10.1.3.1	
	서랍 및 레일의 내구성 ^c	사용상 지장이 있는 파손 및 변형이 없을 것	10.1.3.2	
	서랍의 급속 개폐 ^c	사용상 지장이 있는 파손 및 변형이 없을 것	10.1.3.3	
	서랍의 바닥판 변형	사용상 지장이 있는 파손 및 변형이 없을 것	10.1.3.4	
재료	목재	함수율(%)	12 이하이어야 한다.	10.2.1
	합판,섬유판, 파티클보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mg/L)	평균0.5 mg/L 이하 이어야 한다.	10.2.2
	도장막	밀착성	도장막이 벗겨지지 않을 것	10.2.3.1
		도장막의 경도	경도 H 이상이어야 한다.	10.2.3.2
		방청성 ^d	흙의 양옆 3 mm의 바깥쪽 부분에 부풀 및 녹이 슬지 않아야 한다.	10.2.3.3
		촉진내후성	KS K 0911 표 1에 의한 색표 3호 이상	10.2.3.4
안전성	목질가공재 (치장판)	폼알데하이드	0.015 mg/(m ² · h) 미만	10.2.4
		TVOC	0.1 mg/(m ² · h) 미만	

^a 선반판 나비의 치수가 250 mm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b 유리재 선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c 서랍의 높이가 125 mm 이하 또는 내용적이 1 dm³ 이하인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d 금속부 도장에만 적용한다.

9 시험조건

시험의 종류에 따라 인용하는 시험방법의 시험조건에 따른다.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는 KS G 4007의 3절(시험의 일반조건)에 따른다.

10 시험

10.1 강도 및 내구성 시험

강도 및 내구성 시험은 다음 항목을 만족해야 한다.

10.1.1 선반판 시험

선반판 시험은 다음 항목에 따른다.

10.1.1.1 선반판 지지구의 강도시험

선반판 지지구의 강도 시험은 KS G ISO 7170의 6.1.4에 따른다. 시험하는 선반판의 한쪽 지지구로부터 약 220 mm까지의 부분을 제외한 선반판 위에 선반판 면적 1 dm² 당 질량 1.0 kg의 추를 가하고, 1.1 kg(나비 70 mm × 두께 10 mm × 길이 200 mm)의 강제 충격판을 지지구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10회 전도시킨다.

10.1.1.2 선반판의 휨 시험

선반판의 휨 시험은 KS G ISO 7170의 6.1.3에 따른다. 선반판 위에 선반판 면적 1 dm²당 질량 1.5 kg의 추를 선반판에 균등하게 1주일(168시간)간 가한다.

- a) 추를 가하기 전의 선반판의 휨
- b) 추를 가한 상태에서 1주일(168시간)이 지난 후 추를 제거한 상태에서의 선반판의 휨

10.1.2 걸이용 레일

걸이용 레일 시험은 다음 항목에 따른다.

10.1.2.1 걸이용 레일 지지구의 강도 시험

걸이용 레일 지지구의 강도 시험은 KS G ISO 7170의 6.3.1(걸이용 레일 지지구의 강도 시험)에 따른다. 시험하는 걸이용 레일에 레일의 길이 1 dm당 4 kg의 추를 1주일간 가한다.

10.1.2.2 걸이용 레일의 휨 시험

걸이용 레일의 휨 시험은 KS G ISO 7170의 6.3.2(걸이용 레일의 휨 시험)에 따른다. 시험하는 걸이용 레일에 레일의 길이 1 dm당 4 kg의 추를 균등하게 1주일간 가한다.

- a) 추를 가하기 전의 레일의 휨
- b) 추를 가한 상태에서 7일(168시간)이 지난 후 추를 제거한 상태에서의 레일의 휨

10.1.3 서랍시험

서랍 시험 중에는 서랍장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다리 또는 바퀴의 회전부를 멈춤 장치에 맨다. 또한 수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부분에 표 A.1에 따라 정한 질량의 추를 올려놓거나 매달고 서랍장을 고정한다.

10.1.3.1 서랍 및 레일의 강도 시험

서랍 및 레일의 강도 시험은 KS G ISO 7170의 7.5.2(서랍 및 레일의 강도 시험)에 따라 250 N의 힘을 가하여 시험한다.

10.1.3.2 서랍 및 레일의 내구성 시험

서랍 및 레일의 내구성 시험은 KS G ISO 7170의 7.5.3(서랍 및 레일의 내구성 시험)에 따라 40 000

회 개폐 동작을 반복하여 시험한다.

10.1.3.3 서랍의 급속 개폐 시험

서랍의 급속개폐 시험은 KS G ISO 7170의 7.5.4(서랍의 급속 개폐 시험)에 따르고, 서랍 안쪽에 1 dm³당 0.33 kg 질량의 추를 가하고, 서랍의 질량이 5 kg일 때는 1.5 m/s, 35 kg일 때는 1.0 m/s의 속도가 되도록 서랍을 고정된 시험 장치로 시험한다.

10.1.3.4 서랍의 바닥판 변형 시험

서랍의 바닥판 변형 시험은 KS G ISO 7170의 7.5.5에 따르고, 60 N의 힘을 규정한 위치에 가하여 시험한다.

10.2 재료의 시험

10.2.1 목재의 함수율

목재의 함수율은 KS F 2199에 규정한 방법이나 전기적 측정방법으로 5곳을 측정하여 최상 값을 측정값으로 한다.

10.2.2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시험

테시케이터법에 의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시험은 KS M 1998의 9절에 따른다.

10.2.3 도장막 시험

나비 50 mm, 길이 150 mm의 시험편을 제품으로 채취하거나 또는 생산조건과 동일 조건으로 시험편을 제작한다.

10.2.3.1 밀착성 시험

도장막의 밀착성 시험은 KS F 6313의 7.8.1에 따른다.

10.2.3.2 도장막의 경도시험

도장막의 경도시험은 KS F 6313의 7.8.3에 따른다.

10.2.3.3 방청 시험

방청 시험은 KS F 6313의 7.8.2에 따른다.

10.2.3.4 촉진내후성 시험

도장제품의 촉진내후성 시험은 KS M ISO 11507에 따르며 UV 노출은 (60 ± 3) °C에서 4시간, 응축 노출은 (50 ± 3) °C에서 4시간 노출시킨다. 이 시험을 2회 반복한 후 KS K 0911 표 1에 따라 판정한다.

10.2.4 목질가공재(치장판) 안전성 시험

반침장의 목질가공재(치장판)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은 KS M 1998의 7절

에 따른다. 다만, 소형챔버법에서 시험용 챔버 공기 농도의 측정은 시험 시작 후 7일 (168시간 ± 2 시간) 째에 포집하여 실시한다.

11 설치

11.1 설치준비

시스템 가구의 설치 전에 설치부위의 선행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시스템 가구의 설치부위의 위치 및 크기 등을 확인하여 잘못된 곳은 바로잡아야 하고, 시스템 가구 설치에 지장을 주는 돌출물 등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11.2 시스템 가구의 설치

시스템 가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조자가 지정하는 시공방법 또는 제공되는 설명서에 따라 설치 할 경우 동등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a) 시스템 가구의 구성재 및 부품은 나사못 등으로 견고하게 결합할 것.
- b) 나사류, 기타 쇠붙이를 이용하여 조립하는 경우 결합부가 헐거워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 c) 선반판은 사용시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부착할 것.
- d) 서랍의 개폐는 작동이 원활하고 쉬워야 한다.
- e) 시스템 가구의 조립 및 설치순서는 각 제조회사에서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해당제품 설명서에 따라 설치하거나 전문 시공자가 설치한다.

11.3 설치 후 점검

설치된 제품의 기능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완료 후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 a) 표준에 맞는 자재의 사용 여부
- b) 벽체 및 천정, 바닥의 조건에 따른 적절한 고정물(콘크리트못, 나사못, 앵커 등)의 사용과 고정 여부
- c) 설치 후 시스템 가구의 수평은 맞는지 여부
- d) 설치 후 시스템 가구의 흔들림은 없는지 여부
- e) 이음새의 벌어짐이 있는지 여부
- f) 걸모양의 다듬질은 양호하고 사용상 현저한 변형 및 결점이 있는지 여부

12 검사

제품의 검사는 걸모양, 치수, 재료 및 재료의 안전성, 구조, 품질, 표시에 대하여 실시하여 5절, 6절 ~ 8절 및 13절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샘플링 검사방식을 이용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13 표시

시스템 가구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a) 품명
- b) 제조자명(주소, 연락처) 또는 약호
- c) 제조일자 및 약호
- d) 주된 구성 재료⁵⁾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

14 사용상의 주의사항

제품에 대한 취급설명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은 기재하여야 한다.

- a) 사용상의 주의사항
- b) 설치상의 주의사항(필요시)

SPS-KHFC-006-6337:2015

해 설

이 해설은 이 표준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니다.

1 제정의 취지

본 표준은 최근에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가정용 드레스 수납의 새로운 형태와 기능을 가진 드레스 시스템가구에 대하여 제조업체간에 제작 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이를 표준화하고 소비자에게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을 제정하게 되었다.

2 제정 경위

본 표준에서 규정하는 드레스 수납시스템(시스템 가구)은 기존의 주로 사용하던 상자형태의 수납 가구인 반침장(붙박이장)이나 현관장(신발장)과는 다른 새로운 기능과 형태의 수납가구이다.

일반 가정에서 옷을 보관하는 전용 룸에 설치하여 옷 및 관련 악세사리를 위주로 보관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바닥 혹은 벽체에 고정하여 사용한다.

본 드레스 수납시스템 제품은 최근에 경제적인 여유가 상승되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시스템 가구 제품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제조하는 업체마다 각기 다른 품질기준 및 제품에서 흘러나오는 유해물질 등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규격화된 표준을 제정하게 되었다.

3 주요 제정 내용

본 표준의 제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통일을 하였고, 주요 재료인 목질가공재 및 표면 마감 자재에 대한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엄격히 정하여 소비자들의 안전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품을 사용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설치기준과 방법, 설치 후 점검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4 용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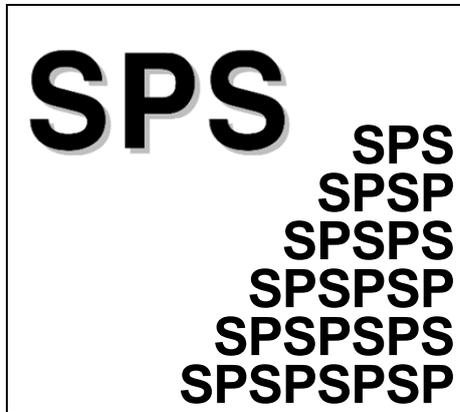
- TVOC(총휘발성유기화합물): 액상 또는 고상으로부터 가스형태로 방출되는 수천, 수만가지의 화합물들의 통칭합이다. 주로 발생 물질은 벤젠, 톨루엔, 자일렌, 에틸렌, 스타이렌, 아세트 알데하이드 등이 있다.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인체에 노출되며, 노출된 경우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며, 심할 경우 암을 일으키기도 한다.
- 5VOC: TVOC(총휘발성유기화합물) 중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타이렌 5개 물질을 말한다.
- 데시케이터법: 가구 재료로 주로 사용되는 가공보드(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에 함유된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의 방출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데시케이터란 용기를 이용하여 유해물질을 포집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며 우리나라 가공보드(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KS표준에서 폼알데하이드 방

출량 등급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다. 본 표준에서 재료(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데시케이터법으로 규정한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

5 향후 계획

본 표준은 향후 인증심사기준을 제정하여 단체표준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SPS-KHFC-006-6337:2015



Dress storage system

ICS 97.140